

의안번호	제 63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이옥규, 박상돈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김기창

1. 제정이유

- 예술인은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.
- 「예술인 복지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.
-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,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- 예술인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명시(안 제3조)
-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(안 제5조)

- 예술인 복지증진 자문·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(안 제7조)
- 예술 창작 공간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-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 후원 협력시스템 구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예술인 복지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입법예고 : 2020. 12. 24. ~ 2021. 1. 3.

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,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예술인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,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,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(조사 및 연구 포함한다)
2.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
4. 예술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
5.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
6.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
7.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문화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)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
2.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7조(창작 공간 지원)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예술 활동 후원)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·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예술인 복지법 (2012. 11. 17. 제정, 2020. 6. 4. 일부개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예술"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.
2. "예술인"이란 예술 활동을 업(業)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,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,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0. 16.>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16.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
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